
201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우수논문지원사업 신청요강

2012. 1.



주요사항 요약

구분	2011	2012	비고
지원예산	① 예산액 : 1,000백만원(142과제)	① 예산액 : 1,000백만원(200과제)	
지원대상	①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	① 「학술진흥법」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	
지원규모 (편당)	① 편당 7백만원	① 편당 5백만원	
평가절차	① 요건심사→패널심사→종합심사	① 요건심사→패널평가→종합평가	
추진일정	① 1월 공고/3~4월 심사/5월 지원	① 좌동	



차 례

I.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1
- 지원근거 1
- '12 중점 추진방향 1
- 기대효과 1
- 추진일정 2

II. 지원내용

- 예산 2
-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2
- 지원유형 3

III. 신청

- 신청자격 3
- 신청기간 및 방법 4
- 신청절차 4
- 신청 및 참여제한 6

IV. 평가 및 선정

- 평가단계 7
- 평가절차 및 내용 7
- 선정 및 협약체결 8

V. 연구비 관리

- 연구비 지급 9

VI. 기타

- 간접비 지급 9
-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9
- 기타 참고사항 9

[붙임1] 연구성과 요약문 11

[붙임2]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12

1. 사업목적

- 적시에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우수한 연구 성과 발굴
-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후속 연구 기반 제공

2. 지원근거

- 「학술진흥법」 제3조 및 제5조
- 「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」

3. '12 중점 추진방향

- 연구비 수혜 확대
 - ※ 과제당 7백만원 → 5백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원과제 수 확대
- 선정된 과제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표현하여 우수논문지원 성과 사례집 발간 및 대국민 전파
 - ※ 선정과제는 교과부 우수성과 100선 후보과제로 추천 예정
- 신규과제 선정 기본방향
 - 국제 전문학술지(SCI급, SCOPUS 게재 학술지 등) 게재 논문 우대 선정
 - 동일 수준의 연구성과일 경우 학문후속세대 및 신진연구자 우대 선정

4. 기대효과

-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성과 발굴 및 전파를 통한 학문 발전에 기여
- 후속 연구 지원을 통한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국가 연구진흥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

5. 추진일정

일 정	추진 내용
2012. 1월	- 2012년도 우수논문지원사업 사업공고 및 안내
2012. 2월	- 우수논문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접수
2012. 3월	- 신규과제 선정평가
2012. 4월	- 신규과제 선정평가
2012. 5월	- 신규과제 연구개시
2012. 6월	- 우수논문지원 성과사례집 발간 기획
2012. 7월	
2012. 8월	- 우수논문지원 성과사례집 발간
2012. 9월	- 교육과학기술부 우수성과 추천
2012. 10월	
2012. 11월	
2012. 12월	

II

지원내용

1. 예산

- 1,000백만원(200과제 내외 지원 예정)

2.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

- 지원분야 : 인문사회 분야(예술·체육학 포함)
- 지원대상 : 「학술진흥법」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
- 지원범위 : 인문사회분야 및 인문사회분야적 성격의 학술논문

※ 예술·체육학 및 문화융복합학 분야의 인문사회분야적 성격의 논문은 지원범위에 포함됨

3. 지원유형 : 편당 500만원(세금포함)

※ 세금 포함(과세 대상), 간접비 미지급, 별도 정산 없음

Ⅲ

신청

1. 신청자격

- 「학술진흥법」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대학·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고(공동저자 포함),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함
 - ※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

2011월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논문, 국제학술지(SSCI, A&HCI, SCI&SCIE, SCOPUS 등)에 게재된 인문사회분야의 학술논문(공동·단독)의 제1저자 (부득이한 사유로 제1저자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받음)

- 국내·외로부터 연구비(교내연구비 포함)를 지원받은 과제는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제외함 (사후인센티브는 인정함)
- 연구비 지원 관련 사사표기 과제는 제외함
- 재단 등재학술지로 등재되기 전에 게재된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
- ※ 재단 등재학술지 수록 여부는 선정 학술지의 학술지 평가 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발행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한함
- 공동연구(다수 저자) 논문 포함함

- ☞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은 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nrf.re.kr>) 초기화면 → 「등재학술지목록」 참조

※ 「학술진흥법」 제6조

제6조(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)

-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·학술단체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(이하 "사업비"라 한다)를 지원하고,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,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,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·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신청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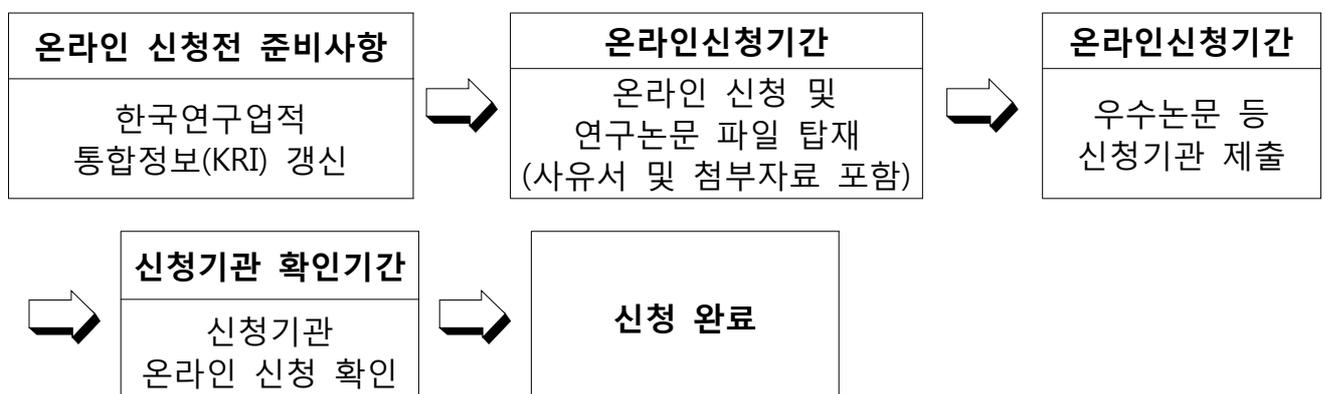
○ 신청기간

- 연구자 신청 : 2012. 2. 14(화), 14:00 ~ 2. 21(화), 18:00까지

- 기관 확인 : 2012. 2. 22(수), 14:00 ~ 2. 23(목), 18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3. 신청절차



가. 온라인 신청 전

- 1) 연구참여자는 재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→연구기반정보→「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(KRI)」에서 본인의 정보(연구업적 등)를 입력, 수정하여야 함 (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.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)
※ KRI 정보 갱신 시 소속, 직위,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(신청 전 사전 확인). 정보 공개 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
- 2)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(학회 등) 회원 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
- 3) 시간강사는 사전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·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나. 온라인 신청

- 1) 신청자(제1저자)는 신청기간 내에 “온라인 신청사항”을 입력하고, “논문” 파일(pdf)과 “연구성과 요약문(붙임 1 참조)”을 탑재하여야 함 (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)
※ 공동논문은 공동저자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
- 2)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논문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·수정이 불가능함
-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 (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)
- 3) 온라인 신청 및 논문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,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
※ 과제번호는 신청 마감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여됨(접수번호와 과제번호는 다름)
- 논문 파일을 탑재하기 전 『인쇄-미리보기』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(『인쇄-인쇄방식』을 ‘자동인쇄’로 바꾼 후 저장)

- 4) 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”를 작성하여 탑재함(연구계획서와 별도 분리, 양식은 붙임 참조)

다. 온라인 신청 후

1) 연구책임자(제1저자)

-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입력내용(논문 및 관련자료 일체)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

2)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(산학협력단 등)

- 신청기관(연구책임자 소속기관)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 1부를 제출받고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,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

4. 신청 및 참여제한

□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

-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「학술진흥법」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
-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(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)를 이행하지 않았거나,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
- 대학·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(학회 등)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」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

□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

- 우수논문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의 1인 연 3과제 제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
- 우수논문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논문 1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(공동저자 수는 제한하지 아니함)

* 연구비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

IV

평가 및 선정

1. 평가단계

단계별	평가구분	평가내용	비 고
1단계	요건심사	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(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)	재단
2단계	전공평가	논문평가	전공평가단
3단계	종합평가	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	종합평가단

2. 평가절차 및 내용

가. 제 1 단계 : 요건심사

- 심사방법 :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
- 심사내용 :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

나. 제 2 단계 : 전공평가

- 평가방법 : 패널평가
- 평가내용 : 논문평가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측정지표
독창성 (30)	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독자성
	연구방법의 독창성 및 독자성
학문적 성취도 (40)	연구내용의 적절성
	연구방법의 타당성
	논문의 우수성
학문발전 공헌도 (30)	학문적 가치
	학문의 파급효과
	교육과의 연계성

다. 제 3 단계 : 종합평가

- 평가주관 : 종합평가단
- 평가내용
 -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
- ※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

3. 선정 및 협약체결

- 예비선정 :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
- 최종선정 :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
- 협약체결 : 한국연구재단(이사장), 주관연구기관(장),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

V

연구비 관리

1. 연구비 지급

-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(주관연구기관장)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
 - ※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
 - ※ 연구비 집행 시 소속기관에서 과세 후 연구자에게 일괄지급

VI

기타

1. 간접비 지급 : 해당사항 없음

2.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

- '14.12.31.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('11.12.7. 발표)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위해 사업별로 신청 자격 및 결과물 제출에 사용되고 있는 “한국연구재단의 등재(후보)학술지” 기준을 '13년부터 “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”로 변경 예정이며,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

3. 기타 참고사항

- 우수논문지원사업은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 없음
-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」에 의거, 신청자(연구책임자)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 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. 단,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

문 의 처

□ 한국연구재단(www.nrf.re.kr)

○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

- 인문사회연구지원팀 : 042-869-6204, 6134, 6130, 6306, 6307, 6309

○ 사업총괄기획 및 규정 관련 문의

-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: 042-869-6103, 6102

○ 전공평가 관련 문의

- 어문학분야 : 042-869-6391 ~ 3

- 역사철학분야 : 042-869-6245 ~ 6

- 법정상경분야 : 042-869-6301 ~ 2

- 사회과학분야 : 042-869-6083 ~ 4

- 문화융복합분야 : 042-869-6136 ~ 7 (예술체육.융복합분야)

○ 전산 관련 문의(온라인신청, 연구업적통합정보, 전산장애)

- 정보팀 Help Desk : 1544-6118

연구성과 요약문

신청논문명

※ 신청논문의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개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(신청논문 별도 첨부)

▣ 핵심연구성과

▣ 세계적인 파급효과

▣ 연구성과의 활용

